



진짜 ‘공생발전’의 전제조건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방법 개선해 적정공사비 확보해야



최근 정부는 전형적인 원·하도급 분업구조의 생 산체계를 가진 우리 건설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파트너링을 통한 공생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원·하도급 업체의 갈등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저 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 속에서 공생발전은 피 할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 사는 ‘공존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건 설업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히 원·하도급 관계 속에서만 공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소지가 높다. 그런 점에서 공생발전이 시대적 당위성 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선다.

상호 협력하는 건설업 생태환경은 적정공사비 확보가 선행되어야만 조성이 가능하다. 싼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면 원도급자는 저가낙찰로 인한 부담을 전 가할 하도급자만 필요할 뿐이고, 원·하도급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신기술·신공법을 개발하고 상호간의 활발한 아이디어 교환을 통하여 기술력·생 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립’을 축으로 한 종래의 비즈니스 관계가 ‘협력’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관계로 전환되기 힘들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유는 운찰제적 입·낙찰제도, 업체 과다로 인한 치열한 수주경쟁에도 원인이 있지만, 실제 소요보다 과소 계상된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에 따른 비합리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에 기인한 바도 크다.

실제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절차 상에서 공공공사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 는 정부의 의견은 중시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 객관성 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 또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건설 공사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공사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중소 건설업 체는 적정공사비 확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원·하도급 업체가 적 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생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해야 한다. 공생발전이 또 하나의 헛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것을 실현하 려는 정부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뒤따라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